

청와대 국민청원문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해주세요!

지난 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의사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를 정부를 겁박했던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또다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전문 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의협의 허위 주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HTTP://bogun.nodong.org/xe/khmwu_5_4/677652](http://bogun.nodong.org/xe/khmwu_5_4/677652))

첫째, 의사단체들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지,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을 두고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 주장대로라면 1963년부터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사단체들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가정전문간호사는 단독으로 주사, 투약, 치료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둘째, 의사단체들이 “전문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간호사의 면허를 부정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허위사실입니다.

1962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수행을 업무로 하는 의료인이며, 간호관
단 및 요양상의 간호와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의 의료행위인 간
호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진료에 관한 간
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해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은 명
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마취간호 분야는 1973년에 보건간호, 정신간호와 함께 분야별 간호를 신설하
는 것에서 시작된 이래, 보건복지부는 집도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마취
관련 진료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전문간호사에 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수차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전
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마취관련 진료업무’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도록 하였고, ‘마취관련 간호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료법을 토대로 규정하였습니다.

환자진료를 위해 간호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할 의사가 부족하여 간호사에게
의학적 진단과 처방, 수술까지 떠넘기는 불법진료행위가 존재합니다.

불법진료는 의사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함에도 의사양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근본원인이며, 그에 더해 지역별
전공의별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
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진료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의
대정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입
법예고를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